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2
----------	-----

제출년월일 : 2019. 0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생활폐기물로 지정된 폐소화기(생활폐기물 분류번호 91-19-00)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거 적정처리 하기위해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의 대형폐기물 품목에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창군 폐기물 관리조례 제10조 제2항의 별표3 「대형폐기물의 품 목 및 수수료」에 폐소화기 추가.

○ 대형폐기물(폐소화기) 처리 수수료 (단위:원)

구분 (kg당)	3.3kg이하	3.3kg초과~19kg이하	19kg초과	비 고
처리가격	2,000	5,000	1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5. 8 ~ 2019. 5. 2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없음
- 5) 평창군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수수료 심의 : 원안의결.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제10조제2항 관련)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품목별	규격	부과금액(원)
가전제품류(17품목)			생활용품류(9개 품목)		
냉장고	500ℓ이상	8,500	필통	모든규격	3,000
	300ℓ이상	7,000	벽시계	대 형	2,000
	300ℓ미만	6,500		중소형	1,000
세탁기	모든규격	5,500	인형류	모든규격	1,000
탈수기	모든규격	3,500	장난감류	모든규격	1,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가방	모든규격	1,000
가습기	모든규격	1,000	액자	길이 1m이상	1,5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길이 1m미만	1,000
팩스기기	모든규격	2,000	진열대	길이 1m이상	5,000
에어컨	264m ² 이상	8,000		길이 1m미만	3,000
	66m ² 이상	7,000	캐비닛	모든규격	6,000
	66m ² 미만	5,000		피아노	업라이트
텔레비전	42인치이상	8,000	그랜드		15,000
	12인치이상	5,000	기타(15개 품목)		
오디오	대형	5,000	창문	목재(쪽당)	
	소형	3,000		대형(높이1.5m이상)	3,000
컴퓨터	일반형	3,000		중형(높이1.0m이상)	2,500
	노트북	1,5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스피커	높이1m이상	5,000		새시(쪽당)	
	높이1m미만	3,000		대형(높이1.5m이상)	4,000
온풍기	264m ² 이상	8,000		중형(높이1.0m이상)	3,000
	66m ² 이상	7,000		소형(높이1.0m미만)	2,000
난로	66m ² 미만	5,000		일반문	목재(쪽당)
	33m ² 이상	4,000	3,000		
33m ² 미만	3,000	새시(쪽당)			
가스오븐레인지	높이1m이상	5,500	4,000		
	높이1m미만	3,000	수족관	대 형	1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2,000		중 형	8,000
선풍기	모든규격	1,500		소 형	4,000
	가구류(16품목)			거울	높이1m이상
장롱	120cm 1쪽	15,000	높이1m미만		3,000
	90cm 1쪽	10,000	자전거	성인용(2발)	3,000
응접세트	장의자	7,000		아동용(2발)	2,000
	의 자	5,000		아동용(3발)	2,000
식탁	6인용 이상	7,000	유모차	모든규격	2,000
	6인용 미만	6,000	깨진유리	kg당 (마대에 담아 배출)	500
밥상	4인용 식탁	2,000		항아리	대형
	4인용 미만	1,500	소형		1,500
싱크대	길이 2m이상	7,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길이 2m미만	5,000	변기통	모든규격	3,500
책상	양수, 대형	7,000	장판	kg당	500
	편수, 소형	6,000	카펫	kg당	500
책꽂이	모든규격	2,000	목재	kg당	500
침대목재	2인용	5,000	플라스틱류	kg당	500
	1인용	3,000	폐소화기류	3.3kg이하	2,000
매트리스	2인용	5,000		3.3kg초과~19kg이하	5,000
	1인용	3,000		19kg초과	10,000
의자	모든규격	2,000	※ 상기 외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를 준용한다.		
장식장	5단 이상	8,000			
	5단 이하	6,000			
화장대	모든규격	6,000			
문갑	모든규격	5,000			
서랍장	5단 이상	6,000			
	4단 이상	5,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신발장	모든규격	4,000			

[붙임 1]

《 폐소화기 처리 관련 법령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의5(소방용품의 내용연수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의 종류 및 그 내용연수 연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의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① 법 제9조의5 제1항 후단에 따라 내용연수를 설정하여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품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한다./ 2017.01.26본조신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① 법 제2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는 별표 4와 같다.

[별표4]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시행규칙 제4조의2 제1항 관련)

3. 생활폐기물의 세부분류 및 분류번호

- 91-19-00 폐소화기류

[별표4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항 관련)

3. 생활폐기물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분석·확인 필요 여부
91-19-00	폐소화기류	R-1-1, R-3, R-4-7, R-10	해당없음
		R-4-1, R-4-4, R-5-1, R-10	해당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연락처	(033) 330 - 2340